
무주남대천 + 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전북 무주군(무주남대천, 상곡천, 적상천), 충남 금산군(봉황천)

202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계획의 개요	1
1.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	2
1.4 계획의 추진경위	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
2.1 평가항목의 설정	4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5
2.3 대안의 설정	7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10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1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11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16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본 결정내용은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 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작성하였음
- 추후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무주남대천, 상곡천, 적상천의 경우 협의기관이 전북지방환경청이며,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봉황천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협의기관임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및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수계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수립주체 등이 상이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시 협약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내 대상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수년이 경과하고 하천간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상이하하여 권역내 일관성 있는 수리·수문량의 검토가 필요하며,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수문특성 변화를 고려하는 등 하천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의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
- 따라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유지관리 등 환경친화적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별표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중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하천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방하천 4개소, 총 연장 97.58km)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

1.3 개발기본계획의 내용

가. 사업명 :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나.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다. 승인기관 : 전라북도청, 충청남도청

라. 협의기관 : 전북지방환경청(전북 무주군), 금강유역환경청(충남 금산군)

마. 위치 및 사업계획

〈표 1.3-1〉 계획의 규모

권역명	하천명	등급	지방하천 구간		하천 연장(km)	비고 (협의기관)
			시 점	종 점		
무주 남대천	무주 남대천	지방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도계교	전북 무주군 무주읍 금강(국가) 합류점	45.08	전북청
	상곡천	지방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890번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무주남대천(지방) 합류점	13.85	전북청
	적상천	지방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443-2번지 삼가저수지 하류지점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무주남대천(지방) 합류점	15.50	전북청
영동천	봉황천	지방	충남 금산군 남이면 궁동천·역평천 합류지점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국가) 합류점	23.15	금강청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지방하천 4개소					9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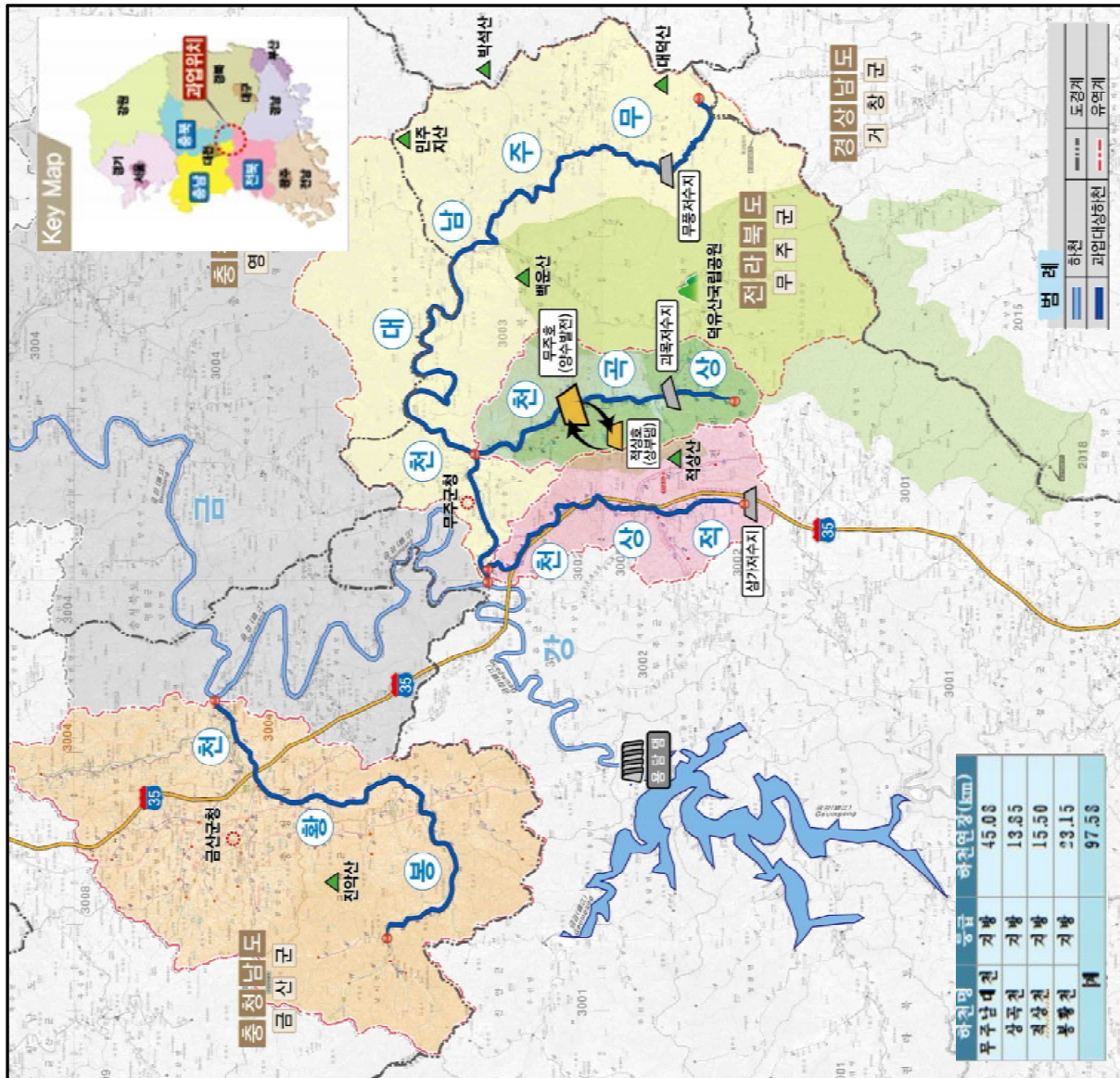
1.4 계획의 추진경위

가. 추진경위

- 2018. 05. :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 착수
- 2021.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2021.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나. 향후 추진경위(안)

- 2021. 10 ~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14일간)
- 2022.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22. 05~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 2022. 07~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공개
- 2022.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2023. 0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그림 1.3-1) 계획하천 위치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

구 분		항 목	선정/제외	선정 및 제외 사유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연계성	선정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 환경관련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 규제 저촉여부 확인	
		대안분석 적정성	선정	○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선정	○ 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훼손 및 동·식물상의 서식환경 변화
			자연환경자산	선정	○ 각종 보전·보호지역 현황, 영향유무 파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선정	○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공발생 ○ 계획하천 내 비탈면발생지역 및 처리대책
			위 락	선정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변화여부 파악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선정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 구조물 구성에 의한 경관변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되는 경관계획 검토
			수 질	선정	○ 공사 시 토사유출 및 현장근무인력의 오수 발생에 의한 영향 ○ 운영 시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리수문	선정	○ 제방축조 및 실설물 설치 등의 적정성 검토	
		해양환경	제외	○ 계획하천 주변에 해양은 위치하고 있지 않음	
		생활환경안정성	기 상	선정	○ 대기질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선정	○ 공사 시 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영향
환경기준 부합성	온실가스		선정	○ 공사 시 투입장비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소음·진동		선정	○ 공사 시 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토 양		선정	○ 공사시 폐유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상	
	악 취		제외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일조장해		제외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위생·공중보건		제외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전파장해		제외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선정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현황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선정	○ 공사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선정	○ 사업시행 전·후 주변 토지이용 변화 검토		
	인구 및 주거	제외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산 업	제외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1〉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 고		
계획의 적정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하천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계획시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하천	○ 계획수립시 및 미수립시의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제시 ○ 최적 대안의 선정사유 검토	계획시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수계 경계로 500m이내	○ 계획하천 주변 동· 식물상 현황조사 ○ 동·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분석	공사시 운영시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하천	○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 분석, 현지조사 실시 ○ 절· 성토에 따른 영향분석 및 예측	공사시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여부 검토 ○ 주변지역과의 경관조화여부 검토	운영시	
		4)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수계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실시 ○ 원단위를 활용한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비점오염원 발생량 등 산정 ○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사시 운영시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기상관측자료	○ 계획하천 주변 정온시설 현황 및 대기, 토양, 소음·진동 등의 환경기준 부합 유지여부, 모델링을 통한 저감방안 제시	공사시
			대기질	수계 경계로 500m이내		
			온실가스	계획하천		
			소음·진동	수계 경계로 500m이내		
			토 양	계획하천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의 가능성 검토	공사시		
	3) 자원·에너지 순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하천	○ 관련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조사 ○ 오수 및 폐기물 발생량 예측·분석 및 처리계획 수립	공사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하천	○ 토지이용계획 변화 예측·분석	운영시		

나. 환경 현황 조사계획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조사지점 및 계획하천 내 지형적·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질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2-2〉 환경 현황 조사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비 고
환경질 측정	하천수질 (19항목)	○ 유량, 수온, BOD, COD, DO, SS, 총대장균군, T-N, T-P, Cd, Hg, Pb, C ⁶⁺ , 클로로필a, TOC, pH, 비소, 시안, 폴리크로네이티드비페닐	33개 지점	2회	-
	하천저질 (14항목)	○ COD, T-N, T-P, Cd, Pb, As, Ni, Hg, C ⁶⁺ ,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유화물	33개 지점	2회	-
	대기질 (8항목)	○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15개 지점	2회	
	소음진동 (2항목)	○ 소음도, 진동레벨	15개 지점	2회	
동·식물상 조사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류 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2회	-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 군집 ○ 육수동물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2회	-

2.3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검토함
- 대안선정은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및 수단방법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2.3-5〉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 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Action)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가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본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수요·공급, 입지, 시가순서, 기타 등에 대한 대안선정은 제외하였으며,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2.3-6〉 대안의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대안선정여부	선정·미선정 사유
계획비교	선정	○ 계획 수립시 및 미수립시 비교·검토
수단방법	선정	○ 계획하천 기본계획 수립시 호안공법에 따른 대안 선정
수요·공급	미선정	○ 계획하천은 유역종합 및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수요·공급 선정 불필요
입지	미선정	○ 본 계획하천은 하천기본계획과 연계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 입지 선정 불필요
시가순서	미선정	○ 해당사항 없음
기타	미선정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안의 설정

1) 계획비교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7〉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

평가영역	행정계획 수립시(Action)	행정계획 미수립시(No Action)
개 요	○ 계획하천에 대하여 치수와 이수 및 환경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재해에 대비함	○ 계획하천에 대하여 치수와 이수 및 환경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불가함
장 점	○ 홍수에 대비한 치수 계획 수립이 가능함 ○ 계획하천에 대한 치수와 이수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함	○ 현재의 하천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개발사업에 의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 할 수 있음
단 점	○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발생이 불가피함 ○ 적정규모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천확폭 등이 필요하여 주변 사유지 보상과 토공사업이 불가피함	○ 집중호우나 홍수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 수립이 불가 ○ 계획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계획수립이 불가능
선정안	●	

2) 수단·방법

- 금회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의 기본구상에 부합하고 계획의 목적(이수·치수 및 환경보전) 달성이 가능한 호안공법(식생호안, 인고구조물 호안)에 대한 2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였음
- 추후 세부 계획수립시 다양한 친환경 호안공법에 대하여 면밀히 비교·검토 후 최종 공법을 선정토록 할 계획임

〈표 2.3-8〉 호안공법 비교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친환경(식생) 호안공법]	[인공구조물 호안공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로의 선형을 결정, 수제부는 정수식물군락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로의 선형을 직강화하고 수제부는 콘크리트 처리
주요 기능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식물재를 이용하는 비탈덮기공으로 자연에 가까운 수제부를 조성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재생 식생호안블럭, 자연석 쌓기, 식생매트 등 식생활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지역내의 홍수배수와 상시배수기능을 위주로 계획 콘크리트 블럭, 옹벽 등 인공소재 적용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수안정성과 생태복원 동시에 충족 수해시 제방 보호기능이 탁월하고 환경 친화적 수변공간으로 동·식물 서식처 제공 돌과 친환경 부재를 사용하여 생태복원을 동시 충족시키며 안정성이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호안공법 수리적으로나 지형적 또는 용지매수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 용이 호안침식(내구성), 세굴방지 능력 우수하고 잡초 식생억제 효과가 큼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적용 불리 수해 시 토사 유실로 식생기반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환경의 연속성 하천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 시간이 흐를수록 표면 균열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 많이 소요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수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천구역 내 생태공간을 복원할 수 있는 식생호안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인 하천공간 조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안	●	

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의견수렴 개요

- 본 사업관련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 시행할 계획임

나. 의견수렴 계획

〈표 2.4-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단계		의견수렴 방법	비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	14일 이상 게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공람 계획하천 및 평가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사·군구와 협약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	중앙일간지 및 지역일간지 각각 1회 이상 공고 20~60일 이내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기간 중에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포함하여 공고 공청회 개최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을 이용	14일 이상 게시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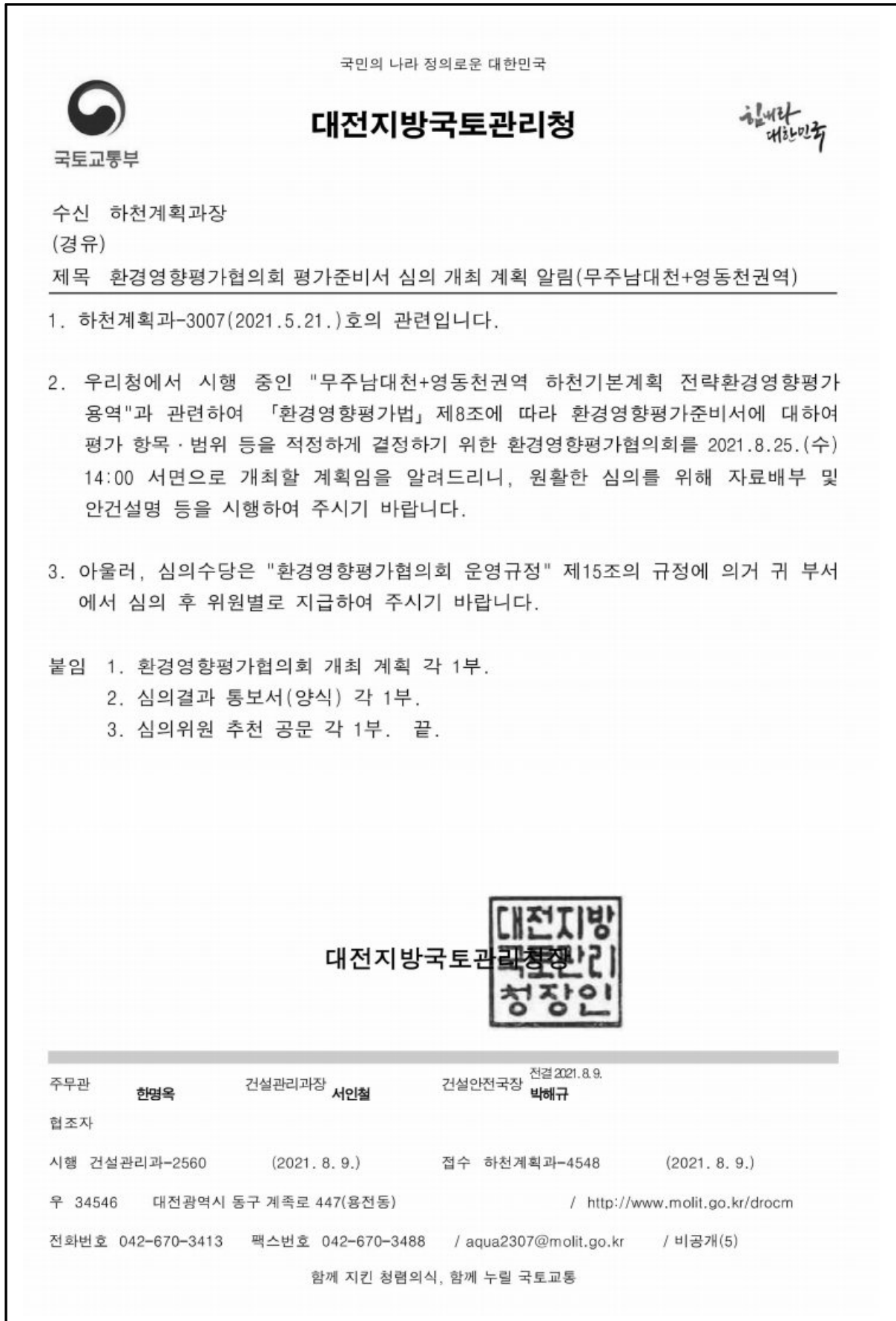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3.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내용

- 심의기간 : 2021년 08월 09일 ~ 2021년 08월 25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전북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 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8명

〈표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여위원


구 성	소 속	성 명	소속(직급)	비고
18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 * *	소속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 * *	민간전문가(위원장 위촉)	
	금강유역환경청	김 * *	협의기관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정 * *	민간전문가(협의기관 위촉)	
	전북지방환경청	전 * *	협의기관	
	전북지방환경청 자문단	손 * *	민간전문가(협의기관 위촉)	
	충청북도	오 * *	환경협력팀장	
	충청남도	김 * *	환경협력교육팀장	
	전라북도	채 * *	자연환경팀장	
	충청북도 영동군	배 * *	환경과장	
	충청남도 금산군	김 * *	환경자원과장	
	전라북도 무주군	이 * *	환경사무관	
	대응종합환경	김 * *	영동군 주민대표	
	남일면 이장협의회	곽 * *	금산군 주민대표	
	무주군신활력플러스단장	박 * *	무주군 주민대표	
	충북환경운동연합영동지	한 * *	시민단체	
	강살리기무주네트워크	이 * *	시민단체	
	중부대학교	김 * *	시민단체 추천	




(그림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 시행문서 사본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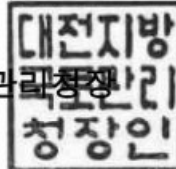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수신 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1. 하천계획과-3007(2021.5.21.)호의 관련입니다.
2.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우리 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음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심의위원에게 배부된 자료의 회수 및 심의수당 지급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1부.
2. 심의 의결서 각 1부.
3. 심의의견 조치결과(작성양식)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

주무관	한명욱	건설관리과장	서인철	건설안전국장	박해규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3008	(2021. 9. 8.)	접수	하천계획과-5161	(2021. 9. 8.)
우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 http://www.molit.go.kr/drocm	
전화번호	042-670-3413	팩스번호	042-670-3488	/ aqua2307@molit.go.kr	/ 비공개(5)

함께 지킨 청렴의식, 함께 누릴 국토교통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

<’21. 9. 7.(화) 건설관리과장>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결과, '수정의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안건명)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평가준비서 심의
- (의결일) '21. 9. 7. (화) 10:00(서면심의, 하천계획과)

□ 심의결과 : 수정의결

소 속	성 명	의견	주 요 의 견	비고
계		1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	8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하천 치수계획 등 수립 시 친환경적으로 계획	소속공무원
한국 환경 정책 · 평가 연구원	박**	14	- 불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 우선 고려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금강유역 환경청	김**	17	- 하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치수 기능 외에도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	협의기관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정**	3	- 이상 기후 대비한 용당댐 방류 상황 대비 포함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위촉)
전북지방환경청	전**	22	-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 덕유산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위치하므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마련 제시 요청	협의기관
전북지방환경청 자문단	손**	12	- 홍수피해예방 및 감소,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능력 검토, 유지관리계획 제시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위촉)
충청북도	오**	12	-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 살리도록 계획 수립	환경협력팀장

소 속	성 명	의견	주 요 의 건	비고
충 청 남 도	김**	12	- 하천 권역 내 일관성 있는 수리·수문 검토로 효율적인 하천관리 필요	환경합력교육팀장
전 라 북 도	채**	8	-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하천 기본계획 수립	자연환경팀장
충청북도 영동군	서**	6	- 인근 정온시설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이행	환경과장
충청남도 금산군	김**	5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보전 방안 적극적으로 강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대안설정 강구	환경자원과장
전라북도 무주군	이**	7	-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계획 수립	환경사무관
대 응 종 합 환 경	김**	-	- 의견없음	영동군 주민대표
남일면 이장협의회	곽**	-	- 의견없음	금산군 주민대표
무 주 군 신 활력 플 러 스 단 장	박**	6	- 생태계의 토사 유출 방지 및 어로 확보 요청	무주군 주민대표
충 북 환 경 운 동 연 합 영 동 지	한**	5	-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합 물관리 필요	시민단체
강 살 리 기 무 주 네 트 워 크	이**	3	- 환경영향 최소화 되도록 계획 수립	시민단체
중 부 대 학 교	김**	4	- 대상지역의 자연성 보존하고 주변 식생과 야생 생물 보호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시민단체 추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3.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건은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써,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세부 검토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무주남대천권역은 인근에 덕유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관적, 환경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봉황천과 금강 합류점, 적상천과 금강 합류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하천 치수계획 등 수립 시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함.

3. 대안

- 호안공법 계획 시에는 경제성, 시공성, 치수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하며, 호안 상부 복토계획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계획은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무주남대천과 상곡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정하여야함.

심의위원

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건은 무주남대천 및 영동천권역 내 위치한 지방하천 4개소의 하천기본계획(계획연장 총 97.58km)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하천역의 보전과 복원계획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천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하천이 자연경관 및 생태적으로 인근지역과 연결된 경우, 수변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수자원 이용 및 홍수, 하천구역 편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없음

2021.8.25.

심의위원:

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의견은 '무주남대천(전북청 소관) 및 영동천 권역(금강청 소관)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하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치수 기능 외에도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수요와 하천 현황(홍수량 분석 등 포함), 관리목표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 설정, 대안(수요, 방법 등)을 비교하여 개수계획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방 및 하천 시설물 계획의 타당성 검토, 대안별(계획대안, 수단·방법대안, 수요·공급대안 등) 장·단점 및 기대효과 평가, 대안의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
 - 시설물 현황, 공간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대안 설정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지역(수변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이나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생태자연도1등급지) 등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예측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계획하천 및 상·하류 등 주변에 위치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등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수원 및 하천수질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현재 토지이용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 생태적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천 공간관리계획 수립·제시

3. 대안

- 하천구간별 치수사업 수요와 사업지구 현황, 하천관리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 설계빈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 하천구간별 시설물 현황, 공간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 치수안정도와 하천공간지정 현황,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 생태적 기법을 반영한 수단·방법 대안 수립
- 대안별 장단점 및 기대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최종 이행 대안 및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현황조사)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별 활동이 활발한 시기(5~8월)에 조사 실시
 - 수질 조사는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주거 밀집지 등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선정
 - 계획구간의 기상자료를 분석을 통해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 영향예측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경관의 경우, 사업지구의 경관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경·중경·원경 별로 가시권분석을 실시하여 충분한 수의 조망점 선정
 - 현재 하천현황(호안상태 등) 및 주변 현황(정온시설 등)을 도면(실측도·항공사진 등)에 표기하여 인근의 전반적인 현황 제시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보전) 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현황을 면밀히 조사·제시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전방안 수립
- (지형지질 및 수리수문) 제방 및 횡적시설물(보·낙차공, 교량) 설치, 하도정비, 유로변경 등 각종 개수계획에 대한 불가피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개수계획의 타당성 확보 및 불필요한 개발 지양
- (수질)

관리계획 수립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환경보호구역 내의 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보호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여부 판단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하천 공간관리계획 수립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요약서를 작성·제공하고 공람장소는 대상지역 내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6. 기타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기수립 기본계획, 주변 하천의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들과 의사결정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 하천과 관련하여 최근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종합계획 반영 여부 제시, 금회 치수계획의 필요성(재해 위험성, 홍수방어 수단·방법 및 규모)을 비교하여 불필요한 계획 지양

2021. 8. 19.

심의위원

라. 전북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의견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무주남대천권역 및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영동천권역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치수기능 뿐 아니라 생태계, 수질 등 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하천 건강성을 회복·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금강에 유입되는 무주남대천, 상곡천, 적상천, 봉황천을 포함하는 하천 기본계획으로 금강수계와 연계하여 광역적인 계획수립 필요
 -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덕유산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 위치하는바, 지정사유 등 환경현황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는 등 저감방안을 마련·제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및 인근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하천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의 지양하여야 하며, 동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도면 포함)하여야 함
 -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홍수관리구역 지정, 천변저류지 등) 우선 검토

3. 대안

- 대안은 계획의 목표,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대안별로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가 아닌 하천개수 외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친환경적 홍수방어대책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하천 전구간에 대해 일률적인 홍수예방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의 치수계획 수립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 '입지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중점평가항목 10개, 일반평가항목 3개, 제외항목 8개로 선정
 - * (중점평가항목)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위락·경관,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토지이용
 - * (일반평가항목) 기상, 온실가스, 토양
 - * (제외항목) 악취, 위생·보건, 해양환경, 인구, 주거, 산업, 전파장해, 일조장해
- '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을 중점평가항목에 추가 반영

○ 평가범위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평가범위를 확대
- 동·식물상 조사는 자연식생이 발달된 산림역, 하천 합류지점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 서식활동이 활발한 구간에 대하여 생물서식지 파악을 구체적·중점적으로 실시
- 기상,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관련 조사시기·지점·항목 및 횟수는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정

○ 평가방법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2.22)'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검토하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

항목		의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 - 계획하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은 계획의 목표,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제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하천(합류되는 하류수계 포함) 및 주변지역의 범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조사(생육이 활발한 시기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계획지구 인근에 덕유산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 자연도 1등급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위치하므로(평가준비서 23쪽) 지정사유 등 환경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방안 마련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정비계획 구간과 주변 경관영향 분석(주요 조망점에서 사업시행 전·후 비교) 및 저감방안 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검토

항목		의견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의 수질오염원 분포, 오염원 관리현황 및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이와 연계한 하천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수질관리계획(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목표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하천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 홍수량 산정, 계획홍수위 등) 산정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 ○ 축제, 호안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거 홍수피해 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 보, 교량 등 정비계획(불필요한 시설물 최소화)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친환경적 생태공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 및 낙차공, 교량 설치현황과 준치 및 재가설(신설) 여부, 준치·재가설 등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 ○ 공사시 하류수계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대책 제시 ○ 계획지구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므로(평가준비서 49쪽)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방안 제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정온시설 분포현황에 따라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공간(보전·복원·친수지구) 구분은 계획하천의 생태적환경 및 수질·수리적 특성, 하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농경지, 마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6. 기 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직 위 :

성 명 :

마. 충남대 토목공학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2020년 집중호우에 의한 용담댐 하류 지역의 수해는 댐 홍수 관리 실패, 댐-하천의 연계 관리 체계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본 계획의 대상 하천들은 해당 수해 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유사한 재해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본 계획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전북권의 용수 수요량 및 용담댐의 적정 홍수조절용량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 역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3. 대안
 - 이상 기후의 발현을 조건으로 한 용담댐의 방류 상황에 따른 대상 하천들의 치수(홍수 위험도에 대한 평가) 및 이수(이수 안전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8. 25.

심의위원

바. 전북지방환경청 자문단

무주남대천+영동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의견서

□ 총괄 의견

- 본 평가준비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 등 수리수문 특성변화 대응에 적합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홍수피해예방 및 감소,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 분석 및 시설물 능력 검토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항목별 제시의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요망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무주남대천 권역(무주남대천, 상곡천, 적상천), 영동천 권역(봉화천)의 4개 지방하천 및 주변 수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환경의 보전을 위한 수질 및 수리수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제외되지 않도록 설정요망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내용을 치수, 이수, 환경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하상변동 분석 및 시설물 능력 검토시 최근 현황자료를 파악하여 제시요망

3.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

- 중권역별 목표수질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하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 수질측정 위치를 지정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함이 필요함
- 수질 측정위치는 상류와 하류 각 1점씩 2지점, 하천 수질 조사시기는 영농기(5월~9월)와 비영농기(10월~4월)로 구분하여 실시요망
- 각 하천유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은 가장 최근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함이 필요함
- 하천 소재 지자체인 무주군, 영동군, 금산군외에 4개하천 유역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추가 요망

4.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환경부, 2017.12)에 의거 계획비교 및 수단·방법으로 설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비교안 설정,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검토(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적성성, 비교안별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제시요망.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 하천 수환경의 보전을 위한 수질, 수리·수문 검토항목에 계획하천 홍수량 및 홍수위 외에 강우분석, 하상변동 및 장래수질 예측, 유황 분석을 추가하고, 수질은 영농기와 비영농기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검토 요망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은 적절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하천유역내 지역주민이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협의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이 필요함.

2021. 08. 25.

심의위원

사. 충청북도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전+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하천의 선형변화 최소화, 구간별 하천생태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수립과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용근거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 생태·경관 환경이 우수한 지역 통과, 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3. 대안

- 계획 시행 시 사업지역의 지형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호안 조성 시 법면 환경사 조성,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질, 수리·수문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함.
- 강수, 기상,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하천의 지형·형상 등 생태적 보전가치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한 수리·수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 동·식물상은 문헌조사, 하천구간별 조사(수생태계 포함)를 통한 사업구역 내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분포여부를 조사·제시하고 보전방안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시행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주거지역, 가축사육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을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시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함. 특히 하천정비 공사 예정 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 기 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2021. 8. 25.

심의위원

아.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 권역 내 일관성 있는 수리·수문 검토로 하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나,
- 사업지구의 수계는 중권역별(금강)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포함되어 공사 추진시 물환경·수질오염 측정망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영양예측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 대상지역 범위는 500m로 설정 평가 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치수, 이수, 홍수·가뭄 대비, 수질 및 수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상 하여야 함.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홍수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하천 용량 여유율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대안의 선정 적정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의 인구 및 주거 평가항목은 중점검토 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 하여야 함(page 59).
 - 공사 추진 및 토사 유출 시 수계권역의 상시 수질오염을 측정하여야 함(33지점).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 범위 내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요약서 및 평가서를 비치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수막 설치, 주민 및 이장 등을 주축으로 문자 발송,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도표, 사진,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영향예측 및 주변 여건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농업 등) 사항을 주민과 협의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수립·이행 하여야 함.
 - 상기 제시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함.

2021. 8. 2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위원 :

자.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계획위치가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 등급지역, 자연경관영향심의대상 등 보전해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임
-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시행 시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위치 지형, 수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유를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
3. 대안
 - 단순 행정계획 수립 여부가 아닌 하천의 관리·이용·보전개발 등의 이·치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목적이 달성가능한 대안 3개이상 설정하여 제시 -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인 대상과 선정사유 명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이 포함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 구체적으로 제시
 - 하천 지질, 형상, 동식물상 생태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량적이며 기술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 수립내용이 충분히 공람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제시된 의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8. 25.

심의위원

차. 충북 영동군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공사 시 인근 정온시설에 토사유출, 미세먼지,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으로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구상안 미선정
3. 대안
 - 계획비교 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선정안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인근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여 비산먼지, 소음진동, 공사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하천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1. 8. 25.

심의위원

카. 충남 금산군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계획 수립 시 환경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대안설정을 강구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 수립 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범위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 진행에 따라 추가적 환경영향 예측 상황 발생 시 대상지역 확대하는 등 재설정 검토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본 계획의 실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항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정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 시 관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 상세한 설명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8. 25.

심의위원

타. 전북 무주군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 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 총괄의견

- 동 사업은 무주 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로서 무주 남대천 권역의 경우 산지지역임을 감안 수리 수문량의 검토가 필요하며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개수계획등의 계획 수립과 하천의 이치수등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역의 경우 지방하천(무주 남대천, 상곡천, 적상천)으로 적정하다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수립 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제시하고 또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종 보호구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검토,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수립에 따른 대안을 2개 이상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따라 분류·작성하여야 함

○ 평가범위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

○ 평가방법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수록·제시
- 기 제시한 평가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에 의거 적정 평가를 실시 제시하여야 함

6. 기 타

2021. 8. 3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직 위 :

성 명 :

파. 주민대표(영동군)

의 견 없 음

하. 주민대표(금산군)

의 견 없 음

거. 주민대표(무주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 + 영동천권역한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평가항목 · 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적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

3. 대안

- 선정안(친환경 호안공법) 적정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적정(자연환경 보존에 중점)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적정(법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요망)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기존 물 막이 사용이 기반조성사업등을 통하여, 방지되고 있으며, 또한 사용중에도 어로의 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훼손된 물막이를 복원하여, 생태계 및 토사의 유출을 막아주고, 어로를 확보하는 활동을 희망함

2021. 8. 25

심의위원

너. 시민단체(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무주 남대천은 금강의 상류로 맑은 식수원입니다. 낙후한 지방하천으로 치수와 이수계획은 중요합니다.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계획 수립시 환경분야에 있어 주민의 접근성(농수,친추공간)과 수생태 보전을 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관계기관 협의가 중요히 다뤄져야 합니다. 두번 예산낭비 없이 통합물관리가 필요합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의견수렴은 중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수렴보다는 사전에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면 주민의 이견이 덜 합니다.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입지 선정에 있어 환경 보전적 부분도 필요한 때입니다.

2021. 8. 25.

심의위원

더. 시민단체(강살리기 무주네트워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토지이용 구상안
 - 생태계 발전·보전을 위해 시범시행.
3. 대안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평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이 최소로 되도록 수립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8. 25.

심의위원

너. 시민단체(중부대학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무주남대천+영동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대상지역의 자연성을 보존하고 주변 식생과 야생생물 보호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2. 토지이용 구상안

- 없음

- 3. 대안

- 식생로안공법에서도 생태성이 높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공간 조성이 될수 있는 공법선정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현황조사시 조사시기 선정 중요.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8. 25.

심의위원